



인도네시아 Tax Alert

2022 년 4 월호

부가세 세금 계산서 관련 신규 규정 발표

2022 년 3 월 31 일 국세청(DGT)은 2022 년 4 월 1 일 부터 발효되는 규정 No. PER-03/PJ/2022(PER-03)를 공표했는데 해당 규정은 부가세 세금 계산서 규정 단순화 및 2020 년 법률 No. 11 (옵니버스법률), 옵니버스법률 시행령 (정부령 2021 년 No. 9 (PP-9) 및 재무부장관령 No. 18/PMK.03/2021 (PMK-18)) ([Tax Info October 2020](#), [Tax Info November 2020](#) 및 [Tax Info March 2021](#) 참조), 2021 년 법률 No. 7(세법개정) ([Tax Info October 2021](#) 및 [Tax Alert November 2021](#) 참조)에 의해 도입된 부가세법 변경 사항과 일관성을 기하기 위함 임.

PER-03 은 다음 규정을 폐지함

- DGT 규정 No. PER-58/PJ/2010, 소매 부가세 사업자 (과세 대상 소매 사업자(소매 PKP))에 대한 부가세 세금 계산서 규정.);
- 부가세 세금 계산서 규정 관련 PER-04/PJ/2020 에 의해 수정된 DGT 규정 No. PER-24/PJ/2012 (PER-24),
- 전자 부가세 세금 계산서 (e-Faktur) 규정에 대한 DGT 규정 No. PER-16/PJ/2014 (PER-11/PJ/2019 에 의해 수정됨); 및
- DGT 의 부가세 세금 계산서 인증에 관한 DGT 결정 No. KEP-754/PJ/2001

PER-03 은 부가세 세금 계산서의 아래 사항에 대해 규정함.

-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 부가세 세금계산서의 필수 정보;
- 부가세 세금계산서 작성, 신고; 및
- 기타 사항.

부가세 세금 계산서 발행 시기

부가세 과세 재화 및/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PKP 는 부가세를 징수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 과세 대상 재화 및/또는 용역의 제공 시;
- 과세 대상재화 및/또는 용역의 제공 이전에 대금 지급시 대금 지급시점;
- 분할 지급인 경우 진행기준에 따른 재화/용역 인도시;
- 과세 대상 재화 및/또는 용역의 수출 시; 또는
- 기타 재무부 장관이 정한 시점.

월합 세금 계산서

행정상 편의를 위해 PKP 는 1 개월간 공급받는 자에게 월말 하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월합 세금계산서(Faktur Pajak Gabungan)라고 함. PER-03 은 월합 세금 계산서에 대한 상세한 요구 사항을 규정함.

- 과세 대상 재화 및/또는 용역 제공 전에 지급(할부 또는 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지급 및 인도가 발생한 동일한 월말에 월합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또한
- 월합 세금계산서는 동일한 거래 코드의 거래만 처리할 수 있음. 동일한 고객에 대한 인도가 여러 거래 코드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거래 코드의 거래만 통합될 수 있음.

최종 소비자 특성

소매 PKP 에 대한 세금 계산서 요구 사항이 PP-9 및 PMK-18 의 변경 사항과 일치하도록 업데이트되었음. PER-03 은 소매 PKP 의 기준이 PKP 의 사업 분류(Klasifikasi Lapangan Usaha)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 대상 재화

및/또는 용역의 인도가 최종 소비자 특성을 가진 구매자에게 제공되는지 여부에 따라 정의됨을 확인함. (전자 상거래를 포함). 최종 소비자 특성은 다음과 같음:

- 구매자가 구매한 과세 대상 재화 및/또는 과세 대상 용역을 직접 소비하거나 활용함; 또한
- 구매자는 사업 활동을 위해 과세 대상 재화 및/또는 과세 대상 용역을 활용하지 않음.

구매자 인적사항 및 PKP 의 서명이 없는 세금 계산서를 통해 징수된 부가세는 공제 대상이 아님.

세금 계산서 필수 정보

형식적 요구 사항

통상, 세금 계산서는 다음의 정보가 완전하고 정확하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세금 계산서의 형식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됨.

- 과세 재화 및/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이름, 주소 및 납세자번호(Nomor Pokok Wajib Pajak(NPWP));
- 다음을 포함한 과세 재화 및/또는 용역의 구매자/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 기업 또는 정부 기관명, 주소 및 NPWP;
 - 인니 개인 구매자의 경우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NIK(Nomor Induk Kependudukan)) 또는 NPWP;
 - 외국인의 경우 성명, 주소, 여권번호; 및
 - 인니 거주자가 아닌 외국 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주소.
- 가격 및 할인이 포함된 재화 또는 용역의 유형;
- 징수된 부가세 (및 사치품 판매세(LST)) 금액;
- 세금 계산서 코드, 일련 번호 및 날짜; 또한
- 세금 계산서 서명권 자의 성명 및 서명.

PER-03 은 구매자/공급받는 자의 실제 주소가 세적 등록 사실확인서 또는 PKP 인증서에 명시된 주소와 다른 경우 PKP 가 SPPKP 에 명기된 주소 또는 실제 주소를 사용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예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구매자/공급받는 자는 세무서에 주소 변경 사항을 의무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함.

주된 납세지

일반적으로 인니내 여러 관할 구역 세무서에 위치한 사업 단위를 통해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PKP 는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등록해야 하는데 해당 PKP 는 일정 세무서에 주된 납세지 신청을 할 수 있음. 단, 등록된 사업자의 부가세 관리가 자동으로 주된 납세지가 선정되는 PKP 는 제외. PER-03 이전에는 PKP 가 주된 납세지로 등록된 PKP 에게 공급하는 경우 과세 대상 재화 및/또는 용역이 주된 PKP 또는 다른 사업 단위에 제공되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구매자/공급받는 자의 정보가 주된 납세지 PKP 정보와 일치해야 했으나 PER-03 에 의거 공급이 다른 사업 단위로 진행되는 경우 세금 계산서에 명시된 구매자/공급받는 자의 정보는 다음과 같아야 함:

- 주된 납세지 사업자 PKP 명;
- 주된 PKP 납세자 번호; 및
- 실제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주소

상기 규정 변경으로 인해 구매자/공급받는 자가 복수의 주된 납세지 사업 단위를 소유하는 경우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PKP 와 매입 부가세를 공제하려는 PKP 모두에게 추가적인 관리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PKP 는 세금계산서 상의 구매자/공급받는 자 정보의 정확성을 보증할 의무가 없으나 매입

부가세를 공제하려는 PKP 는 세금 계산서에 명기된 정보의 정확성을 보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 계산서 발행인에게 재화 및/또는 용역이 실제로 인도되는 주소와 일치하는 주소 정보가 포함된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도록 요청해야 함.

특정 과세 대상 물품 인도에 대한 부가세

차량 신제품, 토지 및/또는 건물, 과세 재화 및/또는 용역을 자유 무역 지역/자유 무역 항구로 인도하는 경우 PER-03 은 이러한 인도 유형에 대한 특정 제품 정보를 부가세 세금 계산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세금 계산서에 공급관련 이전보다 더 자세한 정보 표시가 요구됨.

부가세 세금 계산서의 거래 코드

PER-03 에 따른 거래 코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

거래 코드	인도 유형	비고
01	거래 코드 02 ~ 09 에 해당하지 않는 과세 재화 및/또는 용역의 제공	코드 01~04 는 변경되지 않음
02	부가세 징수자(Pemungut PPN/VAT collector)인 정부 기관에 공급하는 거래	
03	부가세 징수자(Pemungut PPN/VAT collector)이나 정부 기관이 아닌 자에게 공급하는 거래	
04	부가세법 8A 조에 의거과세 표준이 별도로 정해지는 거래	
05	부가세법 9A 조에 따른 매입 부가세 공제 메커니즘을 대체하기 위해 최종 부가세 메커니즘(특정 금액 부가세)이 적용되는 다음 범주 중 하나에 해당하는 PKP 의 과세 대상 재화 및/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최고 금액까지의 총 수익. • 특정 사업 활동(예: 복잡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제 3 자를 통해 수행되는 거래 등)을 수행함; 및/또는 • 특정 과세 재화 및/또는 용역 제공 (예: UU HPP 에 따른 과세 재화 및/또는 과세 용역 확대에 의해 부과되는 부가세) 	이 코드는 PER-03 이전에는 사용되지 않음.
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 부가세 세율 이외의 부가세율을 사용하여 제공하는 경우; 및 • 부가세법 16E 조에 따라 외국 여권 사용 개별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PER-03 이전 거래 코드 06 은 담배 제품 인도에도 사용되었으나 이는 PER-03 에서 삭제됨.
07	부가세 조세 혜택, "부가세 미징수" 혜택 또는 "정부 부담 부가세" 혜택을 사용하여 과세 대상 재화 및/또는 과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거래 코드 07 과 08 을 사용해야 하는 거래 내역이 업데이트되었음.
08	부가세가 면제되는 과세 대상 재화 및/또는 과세 대상 용역의 제공	PKP 는 이러한 거래 코드를 사용하는 자세한 거래 유형에 대해 PER-03 에 대한 첨부 파일을 참조할 수 있음.
09	부가세법 16D 조에 따른 과세 대상 고정 자산 인도	

IDR 이외 통화 거래

이전에는 IDR 이외 통화 거래시 세금계산서 작성일에 적용되는 재무부 장관령(KMK 환율)에 따른 환율을 적용하였으나 PER-03 에 따르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하는 일자의 KMK 환율이 적용됨. 이로 인해 세금 계산서가 늦게 발행되는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 발생일과 세금계산서 작성일 사이의 환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부가세 세금 계산서 작성 및 신고

전자 세금 계산서 (e-Faktur)

DGT 는 2014 년 e-Faktur 를 도입했으며 이후 일반 부가세 세금 계산서로 간주되었음. 부가세 세금 계산서가 다음과 관련된 경우 PKP 는 e-Faktur 가 필요하지 않음.

- 소매 PKP 세금 계산서 요구 사항을 따라야 하는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 부가세 세금 계산서와 부가세 세금 계산서로 처리되는 문서를 사용한 부가세 징수; 또는
- 부가세법 16E 조에 따라 외국여권 사용 개인 구매자에게 과세 대상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PER-03 에 따른 e-Faktur 시스템 실행 절차는 이전 절차와 유사함. 즉, PKP 는 DGT 로부터 전자 인증서, 활성화된 PKP 계정 및 부가세 세금계산서 일련 번호(nomor seri faktur pajak (NSFP))를 획득해야 함. 단, PER-03 은 PKP 에 발급할 수 있는 최대 NSFP 수를 다음과 같이 제한함.

- 신규 PKP 의 경우 75 개 NSFP; 및
- 기존 PKP 의 경우:
 - 이전 3 개월 동안 사용한 NSFP 의 총 수가 75 개 이하인 경우 75 개의 NSFP; 또는
 - 지난 3 개월 동안 사용한 NSFP 의 총 개수가 75 개 이상인 경우, 최근 3 개월 동안 사용한 NSFP 의 총 개수의 120%.

사업 특성상 일정 갯수의 NSFP 를 필요로 하는 PKP 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가 적용됨.

- 신규 PKP
- 주된 납세지 등록 PKP; 또는
- 거래건수 증가.

DGT 발급 NSFP 는 NSFP 발급일로 부터 NSFP 에 표기된 연도 말까지 유효함.

부가세 세금 계산서의 수정, 대체 또는 취소

세금 계산서 수정, 대체 또는 취소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됨. 관련 부가세 신고 이전 이거나 현행 세법에 의거 수정할 수 있는 경우 세금 계산서는 취소될 수 있음.

DGT 부가세 세금 계산서 승인

PER-03 은 특정 월에 작성된 모든 세금계산서는 그 다음 달 15 일까지 DGT 에 업로드하고 승인하도록 요구함. DGT 는 해당 기한내 승인되지 않은 세금 계산서를 거부하며 적법 세금 계산서로 간주하지 않음.

기타 사항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PKP 는 수작업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음. 단, DGT 로 부터 해당 불가항력 상황 해제시 해당 세금계산서는 e-Faktur 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함.

e-Faktur 데이터 손실 또는 파손시 PKP 는 이전에 DGT 에 업로드되고 승인된 e-Faktur 에 데이터를 DGT 에 요청할 수 있음.

PER-03 에는 다음과 같은 경과 규정이 포함됩니다:

- PER-24 에 따라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매입 부가세는 아래 경우에도 공제 기준을 충족하는 한 계속 공제 가능함:
 - 세금 계산서에 기재된 구매자/공급받는 자의 주소가 SPPKP 에 기재된 주소와 상이하더라도 해당 주소가 실제 주소인 경우;
 - 세금계산서가 e-Faktur 시스템 실행 이전에 작성되었으며 DGT 에서 발행하지 않은 NSFP 를 사용하는 경우;
 - e-Faktur 시스템 실행 이전에 부가세 세금 계산서가 작성되었으며 NSFP 가 중복된 경우;
 - 세금 계산서가 e-Faktur 시스템 실행 이전에 작성되었으며 DGT 가 NSFP 를 발행하기 전에 발행되었음; 및/또는
 - 세금 계산서 승인권자가 서명했지만 해당 승인권자가 DGT 에 늦게 등록됐거나 아직 등록되지 않은 경우; 및
- 현재 PER-16 에 따라 PKP 가 사용 중인 e-Faktur 애플리케이션은 DGT 가 이 애플리케이션의 사용 승인을 취소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음.

Contact Persons

Questions concerning any of the subjects or issues contained in this newsletter should be directed to your usual contact in our firm, or any of the following individuals:

Business Tax

Melisa Himawan
Tax & Legal Leader
mehimawan@deloitte.com

Business Tax, M&A and Tax

Management Consulting
John Lauwrenz
jlauwrenz@deloitte.com

Transfer Pricing

Roy David Kiantiong
rkiantiong@deloitte.com

Business Tax and International Tax

Cindy Sukiman
csukiman@deloitte.com

Business Tax and Business Process Solutions

Ratna Lie
ratnalie@deloitte.com

Transfer Pricing

Balim
bbalim@deloitte.com

Business Tax

Dionisius Damijanto
ddamijanto@deloitte.com

Business Tax, Business Process Solutions and Gi3

Roy Sidharta Tedja
roytedja@deloitte.com

Transfer Pricing

Shivaji Das
shivdas@deloitte.com

Business Tax

Heru Supriyanto
hsupriyanto@deloitte.com

Business Tax, Indirect Tax and Global Trade Advisory (Customs)

Turmanto
tturmanto@deloitte.com

Transfer Pricing

Sandra Suhenda
ssuhenda@deloitte.com

Business Tax

Muslimin Damanhuri
mdamanhuri@deloitte.com

Global Employer Services and Business Process Solutions

Irene Atmawijaya
iatmawijaya@deloitte.com

Global Employer Services

Sri Juliarti Hariani
shariani@deloitte.com

Business Tax

Reggy Widodo
rwidodo@deloitte.com

Deloitte Touche Solutions

The Plaza Office Tower, 32nd Floor
Jl. M.H. Thamrin Kav 28-30
Jakarta 10350, Indonesia
Tel: +62 21 5081 8000
Fax: +62 21 2992 8303
Email: iddttl@deloitte.com
www.deloitte.com/id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Indonesia

In Indonesia, services are provided by Deloitte Touche Solutions.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